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521호 2020. 3. 23. (월)

【규 칙】

- 정선군 규칙 제1337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.....2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규 칙

제2회 조례·규칙심의회(2020. 03. 13.)에서 의결된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3월 23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규칙 제1337호

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입금액의 10%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그 밖에 상품권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☐ 개정이유

- 가. 코로나19 발생 및 설·추석명절 등 특별한 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정선아리랑 상품권의 구매를 촉진 하고자,
- 나.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정선아리랑 상품권 구매 시 포인트 적립률을 5%에서 10%로 상향조정 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가. 코로나19 발생 및 설·추석명절 등 특별한 기간에 일정기간동안 정선아리랑 상품권 구매포인트 적립율 상향조정(제6조 제1항 단서 신설)
- 포인트 적립률 : 5% ⇨ 10%
- 나. 그 밖에 상품권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6조 제2항 신설)